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신설〉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43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요 및 총괄 검토의견	2
2.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5
가. 체류기간 상한 등에 관한 특례	5
나.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10
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	16
라.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18
마. 영유아 보육에 관한 특례	20
바. 부 칙	2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윤덕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5.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민생과 관련한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학부모의 체류에 관한 특례, 평생교육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요 및 총괄 검토의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함)는 2024. 1. 18.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설치되었음.

또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전북자치도를 설치하는 외에 전북자치도에 실질적인 특례와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4. 12. 26.부터 시행될 예정임.

<현행법 및 전부개정법률 개요>

구 분	현 행	전부개정법률
제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및 시행	(제정) 2023. 1. 17. (시행) 2024. 1. 18.	(전부개정) 2023. 12. 26. (시행) 2024. 12. 27.
구성	본칙 총 28개 조항	본칙 7편-13장-9절 총 131개 조항
주요내용	전북자치도 설치	전북자치도 설치
	-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지원방안 마련 (농생명·환경·인력·금융분야 등 권한이양 및 특례마련)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이전 및 경제, 교육, 복지 분야의 특례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부개정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전북자치도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대폭 신설하는 내용의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전북자치도 또한 전부개정법률의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임.

<전부개정법률 집행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

절차	자체방향설정 /기본구상과제	기본/실시계획 용역	조례 · 시행령
	75	기본 21, 실시 4	조례 56, 시행령 1
추진 상황	- 방향설정완료 75 - 기본구상과제 26 (완료 9, 추진중 17)	< 기본계획 > - 완료 1 - 추진중 14 - '25년이후 6 < 실시계획 > - 추진중 2 - '25년이후 2	< 조례 > - 상반기 완료(6월) 14 - 하반기 이후 38 - '25년 이후 4 < 시행령 > - (국조실)1차 협의 완료(5.17.) → 14개 부처 30개조문 - (행안부)최종 협의 및 절차 진행중

※ 기본구상 : (완료) 농생명산업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추진중)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등

기본계획 : (완료)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지정
(추진중) 농생명산업지구,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핀테크 육성지구 등

실시계획 : (추진중) 글로벌생경명경제도시 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25년이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새만금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 자료: 전북자치도

즉, 전북자치도에 어떤 분야의 권한이양 또는 특례가 추가로 필요한지, 이미 도입된 권한이양 또는 특례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현재로서는 이를 평가·검토할만한 사례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전북자치도에 추가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추가 특례의 필요성 내지 효과성과 함께 전북자치도 출범 경과,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기 부여된 권한이양 및 특례사항의 집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특례 반영을 위해 충분한 부처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가. 체류기간 상한 등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국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및 그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42조의2(체류기간 상한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¹⁾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부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케이팝학교’는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2024. 12. 27. 시행될 예정인 제도로,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임²⁾. 학교의 종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며, 전북자치도에서 설립·운영함.

외국인학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의 자녀 중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및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³⁾로서, 국제협력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임.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를 제외하고,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국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D-4-3 비자(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①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

사증)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학생의 부모 중 1인은 F-1-13 비자(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 사증)를 발급받아 자녀와 함께 입국할 수 있음.

<D-4-3 비자 및 F-1-13 비자 개요>

구 분	D-4-3	F-1-13
체류 자격명	초·중고생	유학생부모
종 류	일반연수(D-4)	방문동거(F-1)
체류기간 상한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2년
대상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	
해당자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1)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초청 전액장학생인 자 2)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으로서 후견인이 있는 자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요 건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의 요건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후견인의 요건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재정요건 등 요건을 갖추는 것 -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 있을 것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21개 국가 국민)
기타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발급 불가

※ 자료: 법무부 사증발급안내매뉴얼 바탕으로 직접 작성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중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외국인의 부모에 대하여는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제케이팝학교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및 그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제케이팝학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재 전부개정법률은 시행예정인 상황이므로 전북자치도에 설치·운영 중인 국제케이팝학교는 부재함. 즉, 현 상황에서는 국제케이팝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특례가 필요한지, 기타 교육과정, 시설 등 운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당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⁴⁾에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에 입학하려는 외국인으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및 그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⁵⁾되어 있었으나,

4)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084호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085호

5) 의안번호 제212408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 제91조(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중·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이 법 제98조에 따른 중·고등과정 국제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류자격 요건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⁶⁾되었고,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 지구·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⁷⁾이 포함되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 특례는 국제케이팝 학교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이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 전속적 사무인 비자업무의 성격을 고려하면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미성년 유학생 부모 장기체류 허용 시 불법 취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도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6) 전국적·통일적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체류자격 등 사증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음.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나.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북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학과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선발일정 및 수업연한 단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 평생교육시민대학에서 학습과정을 마친 자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평생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및 평생교육 시범도시 내 평생교육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평생교육 시범도시와 비교적 유사한 제도로는 「평생교육법」 제15조⁸⁾에 따른 평생학습도시가 있음.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지원하는 도시로, 2024년을 기준으로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평생학습도시 개요>

- ▶ **(개념)**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
- ▶ **(주요 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
- ▶ **(선정 방법)** 매년 공모를 통해 기초지자체 내 조직·인력·예산 등 평생학습 기반을 확인하여,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2001~)
 - ※ 최초 지정 4년이 지난 뒤 재지정평가를 통하여 3년 주기로 재지정(2020~)
- ▶ **(현황)** (2023) 195개 → (2024) 198개
 - ※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7.6%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8) 「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북자치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연도	시·군	연도	시·군
2001	진안군	2017	부안군
2004	전주시	2019	고창군
2005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2020	무주군
2007~2010	군산시	2022	순창군
2011	완주군	미지정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 자료: 202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평생학습도시 기관 현황 바탕으로 직접 작성

위와 같은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 시범도시의 유사성 및 전북자치도의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을 고려할 때, 유사한 제도의 운영에 따른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유사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외에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익산시, 임실군 및 장수군 등 3개 시·군에 대한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지원하고 있어 추진체계의 혼선 및 중복추진 등의 우려가 있으며, 동 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매년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5항 및 제6항)

안 제5항 및 제6항은 전북자치도 내 대학의 평생교육에 관한 학과에 대하여는 학생선발일정 및 수업연한 단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 내 평생교육시민대학에서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재 대학에 입학할 학생은 대학에서 선발하며, 학생선발일정 또한 학교협의체가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⁹⁾

수업연한은 졸업을 위해 최소한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정규학기를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일부(학사·석사학위과정은 1년 이내 등)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학습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개정안에 대하여는 대학의 자율성, 학생선발일정의 차이에 따른 학생의 혼란가능성, 수업연한 등 학사운영의 최소한의 통일성 유지 필요성, 대학교육 품질의 담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제5항 중 학생선발일정과 관련하여, 평생교육 관련 학과 기준이 모호하여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성인 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습자 선발 시 그 시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추진
중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제5항 중 수업연한의 단축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연한 확보 필요성 및 과도한 수업연한 단축으
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임.

또한, 제6항은 평생교육의 품질 하락 우려 및 지역주민의 교육여건
에 대한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입장임.

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의 혁신도시 외 혁신도시 인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90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특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본문¹²⁾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은 도조례로 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¹³⁾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역 성장거점 조성·지원이라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¹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4) 공공기관 2차 이전...수도권과 지역 민심 ‘두 개의 산’ 넘을까?, 한겨레21, 2023. 8. 22.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54268.html>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도지사가 혁신도시 외의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¹⁵⁾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¹⁶⁾되었음.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전라북도 익산시는 개정안의 ‘혁신도시 인근 지역’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전주·완주 지역만으로 한정될 수 있어 이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전라북도 완주군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이 사실상 폐기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의 2차 유치활동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 제149조(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① 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혁신도시 외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규정된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적용한다.

16) 지역 성장거점 조성·지원이라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었음.

라.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90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특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17)는 지역사랑상품

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제한업종이나 등록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 개정안의 입법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시·군·구)의 조례가 아닌 도 조례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영유아 보육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113조의2(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18)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5조, 제17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제공 필요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입법취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18)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피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영유아보육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¹⁹⁾되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²⁰⁾되었음.

1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 제131조(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 지역별 편차가 없는 동일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보육 품질 담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었음.

바. 부 칙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 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 개정안이 시행예정 상태인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일을 2024. 12. 27.로 설정하고, 권한의 이양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의처

02)6788-5337